

제8장 서비스무역

제8.1조 정의

이 장의 목적상,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란 항공기가 운항하고 있지 않는 기간 중 항공기 자체 또는 항공기의 부분에 대하여 행해지는 그러한 활동을 말하며, 이른바 비행 전 운항정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공항 운영 서비스란 수수료 또는 계약에 기반해 공항 터미널, 비행장 및 그 밖의 공항 기반시설 운영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공항 운영 서비스는 항공 운항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는다.

상업적 주재란 서비스의 공급을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 영역 내 모든 유형의 영업적 또는 전문적 설립체를 말하며 다음에 의한 것을 포함한다.

가. 법인의 구성, 인수 또는 유지, 또는

나. 지점이나 대표사무소의 설치 또는 유지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란 항공사의 운항 일정, 가용성, 요금 및 요금 규칙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예약을 하거나 항공권을 발행할 수 있는 전산화 체계에 의하여 제공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직접세는 자본가치 상승에 대한 세금뿐만 아니라, 재산의 양도로 인한 이득에 대한 세금, 상속, 유산취득 및 증여에 대한 세금, 그리고 기업이 지불한 임금 또는 봉급의 총액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총소득, 총자본 또는 소득이나 자본의 요소에 대한 모든 세금으로 구성된다.

법인이란 회사, 신탁, 파트너십, 합작투자, 단독소유기업 또는 협회를 포함하여, 영리목적인지 여부와 민간이나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적용 가능한 법에 따라 정당하게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된 법적 실체를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 가.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구성되거나 달리 조직되고, 그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 활동에 종사하는 법인, 또는
- 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다음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
 - 1) 그 당사국의 자연인, 또는
 - 2) 가호에 명시된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인

법인은

- 가.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그 법인 지분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수익성 있게 소유되는 경우, 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된다.
- 나. 당사국의 인이 그 법인 이사의 과반수를 임명할 권한을 가지거나 달리 그 법인의 행위를 법적으로 지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지배된다. 또는
- 다. 자신이 다른 인을 지배하거나 다른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또는 자신과 다른 인이 모두 동일한 인에 의하여 지배받을 경우, 그 다른 인과 계열관계에 있다.

조치란 법, 규정, 규칙, 절차, 결정, 행정 행위의 형태이거나 또는 그 밖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당사국에 의한 모든 조치를 말한다.

당사국의 조치란 다음에 의하여 취해진 조치를 말한다.

- 가.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 및 당국, 그리고
- 나. 중앙, 지역 또는 지방 정부나 당국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비정부 기관

각 당사국은 이 장에 따른 자국의 의무와 약속을 이행할 때, 자국의 영역 내에서 지역 및 지방 정부와 당국, 그리고 비정부기관에 의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하여 자국이 이용 가능한 합리적인 조치를 한다.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는 다음에 관한 조치를 포함한다.

- 가. 서비스의 구매, 대가 지불 또는 이용
- 나.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당사국이 공중에게 일반적으로 제공되도록 요구하는 서비스에 대한 접근 및 서비스의 이용, 그리고
- 다. 상업적 주재를 포함하여, 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한 다른 쪽 당사국 인의 주재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란 당사국 영역의 관련 시장에서 그 서비스의 유일한 공급자로서 그 당사국에 의하여 공식적으로 또는 사실상 승인을 받거나 설립된 모든 공적 또는 사적 인을 말한다.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GCC 회원국 또는 한국의 국민인 자연인을 말한다.¹

¹ 당사국의 자연인의 정의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아랍에미리트 간, 당사국의 자연인이란 각 당사국의 법령에 따라 한국 또는 아랍에미리트의 국민 또는 영주권자인 자연인을 말한다. 아랍에미리트에 대하여, 영주권자라는 용어는 아랍에미리트의 법과 규정에 따라 유효한 거주 허가증을 보유하는 모든 자연인을 말한다. 이 장 및 그 부속서의 목적상, 앞서 언급된 영주권자라는 용어는 외국인 학생 거주 허가증, 외국인 은퇴자 거주 허가증, 원격 근무 거주 허가증, 가사 근로자 거주 허가증 및 외국인 부양가족 거주 허가증을 보유하는 자연인은 제외한다.

인이란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서비스의 분야란

- 가. 구체적 약속과 관련해서는, 당사국의 양허표에 명시된 대로, 그 서비스의 하나 또는 그 이상 또는 모든 하위분야를 말하며, 또는
- 나. 그 밖에는, 서비스의 모든 하위분야를 포함하는 그 서비스 분야의 전체를 말한다.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이란 시장 조사, 광고 및 유통과 같은 마케팅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여 관련 항공사가 자신의 항공 운송 서비스를 자유롭게 판매하고 시장을 확대하는 기회를 말한다. 이러한 활동은 항공 운송 서비스의 가격 책정이나 적용 가능한 조건은 포함하지 않는다.

서비스는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의 모든 서비스를 포함한다.

서비스 소비자란 서비스를 받거나 이용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란 다음과 같이 공급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 가.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영역에서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해상 운송의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에 의하여, 또는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여 그 서비스를 공급하는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또는
- 나. 상업적 주체나 자연인의 주체를 통한 서비스 공급의 경우, 그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하여 공급되는 서비스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란 상업적 기초에서 공급되지도 않고, 하나 이상의 서비스 공급자와의 경쟁하에 공급되지도 않는 모든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 공급자란 서비스를 공급하거나 공급하려고 하는 모든 인을 말한다.²

서비스의 공급은 서비스의 생산, 유통, 마케팅, 판매 및 배달을 포함한다.

서비스무역이란 다음의 서비스 공급을 말한다.

- 가. 한쪽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다른 쪽 당사국 영역 내로의 서비스 공급(국경 간)
- 나. 한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공급
(해외 소비)
- 다.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상업적 주
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상업적 주재), 또는
- 라.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 의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의 한쪽 당사
국의 자연인의 주재를 통한 서비스 공급(자연인의 주재), 그리고

운수권이란 대가나 사용료를 목적으로 하는 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영역으로, 영역 내에서
또는 영역을 통과하는 정기적 · 비정기적 운항 및/또는 여객, 화물 및 우편물 운송 서비스에
대한 권리를 말하며, 운항 지점, 운항 노선, 운송대상의 형태, 운송 용량, 부과 운임 및 그 조
건, 그리고 항공사의 수, 소유권 및 지배권 등과 같은 기준을 포함한 항공사 지정 기준을 포함
한다.

제8.2조

적용범위

² 서비스가 법인에 의하여 직접 공급되지 않고 지점이나 대표사무소 같은 그 밖의 형태의 상업적 주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우, 서비스 공급자(즉, 그 법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주재를 통하여 이 장에 따라 서비스 공
급자에 대하여 제공되는 대우를 부여받는다. 그러한 대우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재에 대하여 부여되며 서비스가
공급되는 영역 밖에 위치한 공급자의 그 밖의 부분에까지 부여될 필요는 없다.

1. 이 장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의 조치에 적용된다.
2. 이 장은 다음에 적용되지 않는다.

 - 가. 각 당사국의 영역 내에서 정부권한행사로 공급되는 서비스
 - 나. 정부조달
 - 다. 항공 운송 서비스에 관하여,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제외하고, 어떻게 부여되었는지와 관계없이 항공 운수권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또는 항공 운수권의 행사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
 - 1) 항공기 보수 및 유지 서비스
 - 2) 항공 운송 서비스의 판매 및 마케팅
 - 3) 컴퓨터 예약 시스템 서비스, 또는
 - 4) 공항 운영 서비스, 또는
 - 라. 정부지원 용자, 보증 및 보험을 포함하여 당사국이 제공하는 보조금 또는 무상교부
3. 이 장은 당사국의 고용시장에 접근하려는 자연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으며, 영구적인 차원에서의 시민권, 거주 또는 고용에 관한 조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4.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당사국이 자국 국경의 일체성을 보호하고 자국 국경을 통과하는 자연인의 질서 있는 이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포함하여, 자연인이 자국 영역내로 입국하거나 자국 영역에서 일시 체류하는 것을 규제하는 조치를 적용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다만, 그러한 조치는 구체적 약속의 조건에 따라 다른 쪽 당사국에 발생하는 혜택

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방식으로 적용되지 않아야 한다.³

5. 이 장의 목적상, 부속서 8-가, 부속서 8-나, 부속서 8-다, 부속서 8-라-1 및 부속서 8-라-2는 이 장의 불가분의 일부이다.

제8.3조

시장접근

1. 제8.1조 **서비스무역**의 정의에 적시된 공급 형태를 통한 시장접근에 대하여,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합의되고 명시된 제한 및 조건에 따라 규정된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⁴

2. 시장접근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당사국이 지역적 소구분에 근거하거나 자국의 전 영역에 근거하여 유지하거나 채택하지 않는 조치는 다음으로 정의된다.

가. 수량쿼터, 독점,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인지에 관계없이 서비스 공급자의 수에 대한 제한

나.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서비스 거래 또는 자산의 총액에 대한 제한

다. 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지정된 숫자 단위로 표시된 서비스 영업의 총수 또는 서비스의 총 산출량에 대한 제한⁵

³ 다른 쪽 당사국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사증을 요구하고 그 밖의 국가의 자연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약속에 따른 혜택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⁴ 당사국이 제8.1조 **서비스무역**의 정의 가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와 국경 간 자본 이동이 그 서비스 자체의 필수적 부분인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그러한 자본의 이동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당사국이 제8.1조 **서비스무역**의 정의 다호에 언급된 공급형태를 통한 서비스의 공급과 관련하여 시장접근 약속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이로써 자국 영역 내로의 관련 자본 송금을 허용하기로 약속하는 것이다.

⁵ 다호는 서비스 공급을 위한 투입요소를 제한하는 당사국의 조치는 적용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 라. 수량쿼터 또는 경제적 수요심사 요건의 형태로 특정 서비스 분야에 고용될 수 있거나 서비스 공급자가 고용할 수 있으며, 특정 서비스의 공급에 필요하고 직접 관련되는, 자연인의 총수에 대한 제한
- 마. 서비스 공급자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법적 실체 또는 합작투자의 특정 유형을 제한하거나 요구하는 조치, 그리고
- 바. 외국인의 지분 소유의 최대 비율 한도 또는 외국인 투자의 개인별 또는 총액 한도에 의한 외국 자본 참여에 대한 제한

제8.4조 내국민 대우

- 1.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 분야에서, 그리고 그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및 제한을 조건으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서비스 공급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조치에 대하여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부여한다.⁶
- 2. 한쪽 당사국은 자국의 동종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하는 것과 형식적으로 동일한 대우 또는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를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와 서비스 공급자에게 부여함으로써 제1항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다.
- 3. 형식적으로 동일하거나 형식적으로 상이한 대우는 그것이 다른 쪽 당사국의 동종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와 비교하여 한쪽 당사국의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에게 유리하도록 경쟁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불리한 대우로 간주된다.

제8.5조 추가적 약속

⁶ 이 조에서 상정되는 구체적 약속은 어느 한쪽 당사국이 관련 서비스 또는 서비스 공급자가 외국의 것이라는 성격으로부터 기인하는 내재적인 경쟁상의 불리함을 보상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당사국들은 자격, 표준 또는 면허사항에 관한 조치를 포함하여, 제8.3조 및 제8.4조에 따른 양허표 기재사항은 아니나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관련하여 약속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러한 약속은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기재된다.

제8.6조 최혜국 대우

이 협정의 발효일 후 한쪽 당사국이 GATS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라 통보되는 협정을 체결하는 경우,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에 그 협정에서 부여된 혜택을 협상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제8.7조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

1. 각 당사국은 자국이 제8.3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라 행하는 구체적 약속을 양허표에 규정한다. 그러한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 대하여, 각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는 다음을 명시한다.

- 가. 시장접근에 대한 제한 및 조건
- 나. 내국민 대우에 대한 조건 및 제한
- 다. 추가적 약속과 관련된 조치
- 라. 적절한 경우 그러한 약속의 이행을 위한 기간, 그리고
- 마. 그러한 약속의 발효일

2. 제8.3조 및 제8.4조 모두에 불합치하는 조치는 제8.3조와 관련된 열에 기재된다. 이 경우, 그 기재는 제8.4조에 대해서도 조건 또는 제한을 부여하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다.

제8.8조 양허표의 수정

1. 당사국(이 조에서 “수정 당사국”이라 한다)은 이 조의 규정에 따라, 자국 양허표의 약속이 발효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언제든지, 그 약속을 수정하거나 철회할 수 있다. 수정 당사국은 약속의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려는 날의 최소 3개월 이전에 이 조에 따라 수정 또는 철회하려는 자국의 의사를 다른 쪽 당사국에 통보한다.
2. 이 장에 따른 혜택이 제1항에 따라 통보되는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당사국(이 조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라 한다)의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⁷, 수정 당사국은 그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6개월 내에 필요한 보상 조정에 대한 합의에 이르기 위하여 협상을 개시한다. 그러한 협상 및 합의에서, 영향을 받는 당사국과 수정 당사국은 그러한 협상 전에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것보다 무역에 더 불리하지 않은, 상호 유익한 약속의 일반적 수준을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공동위원회는 협상의 결과를 공동위원회에 지속적으로 통보받는다.
3. 제2항에 언급된 서면 요청의 접수일부터 6개월 내에 영향을 받는 당사국과 수정 당사국 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제15장(분쟁해결)에 규정된 분쟁 해결절차를 개시할 수 있다.
4. 영향을 받는 당사국이 제3항에 언급된 기간의 만료일부터 60일 내에 제15장(분쟁해결)에 규정된 분쟁해결절차를 개시하지 않는 경우, 수정 당사국은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를 자유로이 이행한다.
5. 수정 당사국은 제15장(분쟁해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결과에 합치되게 보상 조정을 할 때까지 자국의 약속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없다.

⁷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협의 및 협상의 개시에 대한 서면 요청을 수정 당사국에 전달한다.

6. 수정 당사국이 자국의 제안된 수정 또는 철회를 이행하고 제15장(분쟁해결)에 따라 설치된 중재패널의 결과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15장(분쟁해결)에 따른 중재에 참여한 영향을 받는 당사국은 그 결과에 합치되게 실질적으로 동등한 혜택을 수정 또는 철회할 수 있다.

제8.9조

국내 규제

1.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조치가 합리적이고 객관적이며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되도록 보장한다.

2. 각 당사국은 영향을 받는 서비스 공급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서비스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결정을 신속하게 검토하고, 정당한 경우 그에 대한 적절한 구제를 제공하는 사법 중재, 또는 행정 재판소나 절차를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유지하거나 설치한다. 그러한 절차가 해당 행정결정을 위임받은 기관으로부터 독립적이지 않은 경우, 그 당사국은 그 절차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검토를 실제로 제공하도록 보장한다.

3. 제2항의 규정은 그러한 재판소 또는 절차를 수립하는 것이 당사국의 헌법 구조나 법체계의 성격과 불합치하는 경우 그 당사국에 이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4.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진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승인이 요구되는 경우,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국내법 및 규정에 따라 완료된 것으로 간주되는 신청의 제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신청인에게 그 신청에 관한 결정을 알린다.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의 권한 있는 당국은 과도한 지체 없이 신청의 처리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5. 국가정책목적에 합치하기 위하여 서비스 공급을 규제하고 서비스 공급에 대한 새로운 규제를 도입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면서, 자격요건 및 절차, 기술표준 그리고 면허 요건과 관련된 조치를 포함하여 국내 규제가 서비스무역에 대한 불필요한 장벽을 구성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각 당사국은 개별 분야에 적절한 경우 다음을 보장하도록 노력한다.

- 가.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는 자격 및 능력과 같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에 기초할 것
- 나. 그러한 조치가 서비스의 질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도 이상의 부담을 지우지 않을 것, 그리고
- 다. 면허절차의 경우, 그러한 조치 자체가 서비스 공급에 대한 제한이 아닐 것

6.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참조문서(INF/SDR/2, 2021년 11월 26일)의 규율은 그 규율을 통합하기 위하여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의 참여자인 모든 당사국들의 개선된 GATS 양허표가 발효된 다음 날 모든 그러한 당사국의 제7조에 언급된 양허표에 추가적 약속으로서 필요한 변경을 가하여 통합되고 그 일부가 된다.⁸

7. 제6항에 따라 규율의 통합이 진행 중인 때에는 당사국이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서, 그리고 자국의 구체적 약속에 관한 양허표에 규정된 조건 또는 제한에 따라, 그 당사국은 그러한 구체적 약속을 무효화하거나 침해하는 면허 및 자격 요건과 기술표준을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 가. 제5항가호, 제5항나호 또는 제5항다호에 규정된 기준과 합치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 나. 그러한 분야에서 구체적 약속이 이루어졌을 당시 그 당사국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없었던 방식

8. 당사국이 제7항에 따른 의무와 합치하는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당사국에 의하여 적용되는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표준이 고려된다.⁹

⁸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이 항은 WTO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공동 이니셔티브의 참여자인 이 협정의 당사국에만 적용된다. 이 항의 목적상, 1) 분야 또는 조치가 제 8.7 조에 따른 그러한 당사국의 약속을 이유로 제 8.3 조 또는 제 8.4 조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한도에서,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참조문서의 규율은 그러한 분야 또는 조치에 적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2) 서비스 국내규제에 관한 참조문서 제 2 절의 “발효 전 의견제시 기회 및 정보제공”이라는 제목의 제 14 항부터 제 19 항까지는 그러한 당사국이 GATS에 따라 구체적 약속을 한 분야에만 적용된다.

⁹ “관련 국제기구”라는 용어는 당사국들의 관련 기관에 가입이 개방된 국제기구를 지칭한다.

9. 전문직 서비스에 관한 구체적 약속이 행해진 분야에서, 각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 전문가의 자격을 검증할 적절한 절차를 규정한다.

제8.10조

인정

1. 서비스 공급자의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표준 또는 기준의 전부나 일부를 충족 할 목적으로, 그리고 제3항의 요건을 조건으로, 당사국은 특정 국가에서 습득된 교육 또는 경험, 충족된 요건 또는 부여된 면허 또는 증명을 인정할 수 있다. 조화를 통하여 또는 달리 달 성될 수 있는 그러한 인정은 관련 국가와의 협정 또는 약정에 기초하거나 자율적으로 부여될 수 있다.

2. 기존의 것인지 또는 미래의 것인지에 관계없이 제1항에 언급된 유형의 협정 또는 약 정의 당사자인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이 관심이 있는 경우에, 다른 쪽 당사국에 자국과 그러한 협정 또는 약정의 가입을 교섭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협정 또는 약정을 교섭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당사국이 자율적으로 인정을 부여하는 경우,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습득된 교육, 경험, 면허 또는 증명이나 충족된 요건이 인정되어야 할 것임을 그 다른 쪽 당사국이 증명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부여한다.

3. 어떠한 당사국도 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승인, 면허 또는 증명을 위한 자국의 표준이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국가 간의 차별 수단을 구성하거나 서비스무역에 대한 위장된 제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인정을 부여할 수 없다.

4. 각 당사국은 조기 성과 달성을 위하여 자국의 관련된 권한 있는 기관이 전문직 자격, 면허, 또는 등록 절차의 인정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것을 장려하도록 노력한다.

5. 제4항에 따라 관련된 권한 있는 기관 간에 도달한 약정은 이 조에 합치한다.

제8.11조

독점 및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

1. 각 당사국은 자국 영역의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가 관련 시장에서 독점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2. 당사국의 독점 공급자가 자신의 독점권 범위 밖에 있고 그 당사국의 구체적 약속의 대상이 되는 서비스를 공급함에 있어 직접 또는 계열사를 통하여 경쟁을 하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가 자국의 영역에서 그러한 약속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점적인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3. 한쪽 당사국이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의 독점 공급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불합치하는 방식으로 행동한다고 믿을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그 당사국은 그러한 공급자를 설립, 유지 또는 승인하는 다른 쪽 당사국에 관련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 이 조의 규정은 당사국이 공식적이거나 사실상 다음과 같은 경우, 배타적 서비스 공급자의 경우에도 적용된다.
 - 가. 소수의 서비스 공급자를 승인하거나 설립하는 경우, 그리고
 - 나. 자국 영역에서 그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실질적으로 방해하는 경우

제8.12조

영업 관행

1. 당사국들은 제8.11조에 해당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비스 공급자의 특정한 영업 관행이 경쟁을 제약할 수 있고 이로써 서비스무역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2.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1항에 언급된 관행의 폐지를 위하여 협의를 개시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그러한 요청에 대하여 충분하고 호의적인 고려를 부여하며, 해당 사안과 관련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비밀이 아닌 정보의 제공을 통하여

협력한다. 요청을 받은 당사국은 또한 자국의 국내법에 따라 그리고 요청 당사국에 의한 비밀 보호와 관련한 만족스러운 합의를 조건으로, 그 밖의 이용 가능한 정보를 요청 당사국에 제공 한다.

제8.13조 지불 및 송금

1. 제8.14조에 상정된 상황하에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국은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경상거래에 대한 국제적인 송금 및 지불에 대하여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2.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국제통화기금협정」(이하 “IMF 협정”이라 한다)과 합치하는 외환 조치의 사용을 포함하여, 협정에 따른 국제통화기금 회원국으로서의 당사국들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다만, 당사국은 제8.14조에 따른 경우 또는 국제통화기금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자본거래에 대해서도 그러한 거래에 관한 자국의 구체적 약속과 불합치하게 제한을 부과하지 않아야 한다.

제8.14조 국제수지 보호를 위한 제한

1. 심각한 국제수지 및 대외적 금융상 어려움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경우, 당사국은 구체적 약속과 관련된 거래에 대한 지불 또는 송금을 포함하여 그러한 약속을 한 서비스무역에 대한 제한을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있다. 경제 개발 또는 경제 과도기의 과정에서 당사국의 국제수지에 대한 특정한 압력으로 인하여, 특히 자국의 경제 개발 또는 경제 과도기 프로그램의 이행을 위한 적절한 수준의 재정 준비금의 유지를 보장하기 위하여, 제한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음이 인정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제한은

- 가. 다른 쪽 당사국과 비당사국을 차별하지 않는다.

- 나. IMF 협정과 합치한다.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상업적·경제적·재정적 이익에 대한 불필요한 손해를 피한다.
 - 라. 제1항에 기술된 상황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제한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리고
 - 마. 일시적이며 제1항에 명시된 상황이 개선됨에 따라 점진적으로 해제된다.
3. 그러한 제한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당사국은 자국의 경제 계획 또는 개발 계획에 더 펼수적인 서비스의 공급에 우선순위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특정 서비스 분야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채택되거나 유지되지 않는다.
4. 제1항에 따라 채택되거나 유지되는 모든 제한 또는 이에 대한 변동은 신속하게 서비스무역위원회에 통보된다.
5. 제1항에 따라 제한을 채택하는 당사국은 그 당사국에 의하여 채택된 제한을 검토하기 위하여 다른 쪽 당사국과 협의를 개시한다.

제8.15조

투명성

1. 각 당사국은 이 장의 운영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관련 조치를 신속히 공표하며, 비상 상황의 경우를 제외하고, 늦어도 발효 시까지 공표한다. 서비스 무역에 관련되거나 영향을 미치는 당사국이 서명국인 국제협정도 공표된다.
2. 제1항에 언급된 공표가 실행 불가능한 경우, 그러한 정보는 달리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도록 한다.
3. 각 당사국은 제1항의 의미 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모든 자국의 조치 또는 국제 협정에 관한 특정 정보에 대하여 다른 쪽 당사국의 모든 요청에 신속하게 응답한다. 각 당사

국은 또한 요청이 있는 경우 모든 그러한 사안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다른 쪽 당사국에 제공하기 위하여 기존의 문의처를 이용하거나, 문의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하나 이상의 문의처를 설치한다.

제8.16조 비밀 정보의 공개

이 장의 어떠한 규정도 공개되면 법 집행을 저해하거나, 달리 공익에 반하거나, 특정한 공기업 또는 민간 기업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저해하게 될 비밀 정보를 당사국이 제공하도록 요구하지 않는다.

제8.17조 혜택의 부인

1. 사전 통보 및 협의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는 법인인 경우로서 혜택부인 당사국이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가. 다음을 유지하지 않는 경우

- 1) 혜택부인 당사국이 한국일 경우, 그 비당사국과의 정상적인 경제관계
- 2) 혜택부인 당사국이 걸프협력회의 회원국일 경우, 그 비당사국과의 외교 관계, 또는

나. 혜택부인 당사국이 그 법인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치나 이 장의 혜택이 그 법인에 부여되면 위반되거나 우회될 조치를 그 비당사국 또는 그 비당사국의 인에 대하여 채택하거나 유지하는 경우

2. 사전 통보 및 협의를 조건으로, 한쪽 당사국은 다음에 대하여 이 장의 혜택을 부인할

수 있다.

- 가. 그 한쪽 당사국이 비당사국의 영역으로부터 또는 비당사국의 영역에서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그 서비스의 공급
- 나. 그 한쪽 당사국이 해상운송 서비스 공급의 경우로서 다음에 의하여 서비스가 공급된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 1) 비당사국의 법에 따라 등록된 선박, 그리고
 - 2) 선박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운영 및/또는 사용하는 비당사국의 인
- 다.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가 비당사국의 인 또는 혜택부인 당사국의 인에 의하여 소유되거나 지배되면서 다른 쪽 당사국의 영역에서 실질적인 영업활동을 하지 않는 법인인 경우, 그 서비스 공급자

제8.18조 서비스무역위원회

- 1. 당사국들은 어느 한쪽 당사국 또는 공동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 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사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회합하는 서비스무역위원회(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2. 위원회의 기능은 다음을 포함한다.
 - 가. 이 장의 이행 및 운영의 검토
 - 나. 당사국들 간 서비스무역을 증진하기 위한 조치의 식별 및 권고, 그리고
 - 다. 당사국이 관심을 갖는 그 밖의 서비스무역 문제에 대한 검토